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에 관한 보험회사의 인식실태분석

Insurance Companies' Perception

on the Regulation Supervisory of Retirement Pension

류건식*

Ryu Keon-Sik

이태열**

Lee Tae-Yol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근로자퇴직보장법령(안)상에 나타나 있는 규제감독체계, 즉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등을 개관하고 대표적인 운영(수탁)기관인 보험회사가 바라는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니즈)을 모색해 봄으로써 향후 정형화된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수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규제감독 인식실태 및 규제감독 인식수준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험회사는 자율투자규제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연금제도 도입초기에 최소한의 투자규제의 한도설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둘째, 보험회사는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향후 투자교육 철저, 컴플라이언스체제구축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가 정비되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 연금제도초기에는 연금제정의 안정성 중시 규제감독이 지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이 필요하고 연금회계제정을 통한 리스크관리강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보았다.

※ 국문 색인어: 연금체계, 규제, 감독, 퇴직연금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e-mail: keon@kidi.or.kr)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팀장(e-mail: tylee@kidi.or.kr)

I. 서론

2005년 2월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또한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보호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부합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감독여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더불어 규제감독의 중심에 서 있는 수탁기관의 규제감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물론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이 입법예고되어 있을 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제감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제 실증분석 등을 통해 향후 퇴직연금제도 운용시 고려되어야 할 규제감독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규제감독하에서 제도를 설계·운용하느냐 여부는 노사간은 물론 자본 및 노동시장 등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감독방안설정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종업원의 수급권보장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의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에 대표적인 퇴직연금 수탁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보험회사의 니드 및 성향분석을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자산운용규제감독, 수탁자책임규제감독, 재무건전성규제감독 등 각각의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바라는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의 니드와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 규제감독체계상의 제반시사점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I. 현행 법령상의 규제감독체계 및 선행연구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규제감독체계

퇴직연금 규제감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① 충실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②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③ 퇴직연금제도의 역할강화 등에 있다는 점에서 체계화된 퇴직연금 규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규제감독체계³⁾는 연금보험료를 각출하고(연금각출), 각출된 연금보험료를 운용하며(기금운용), 종업원에게 급부를 지급(급부지급)하는 연금운용 과정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⁴⁾

<표 1> 연금운용 과정상의 규제감독체계

| 분류 | 세부적인 관련 규제감독사항(예시) |
|------|--|
| 연금각출 | - 제도의 인가, 적격요건 제도 설계 등과 관련된 사항 - 계산기초율설정 및 재정방식선택, PSL상각과 관련된 사항 - 연금보험료 각출(청산기준, 계속기준), 최소각출 및 추가각출의무, 연금세제 등과 관련된 사항 등 |
| 기금운용 | - 연기금운용규제(양적규제, 자율규제) 등과 관련 사항 - 수탁자책임 규정 관련 사항 |
| 급부지급 | - 기업도산 수탁기관도산 등과 관련된 사항 - 지급보증제도(PBGC), 최소책임준비금규제 등과 같은 건전성 관련사항 |

이와 같은 3대운용 과정상에서 퇴직연금 규제감독은 ① 연금각출측면에서 연금세제와 관련된 규제감독이, ② 기금운용측면에서 연금투자와 관련된 규제감독과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규제감독이, ③ 급부지급측면에서 재무건전성(종업원수급권보호)과 관련된 규제감독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⁵⁾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에서 규정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을 먼저 살펴보면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4장 제11조 6항부터 제11조 8항 등에 규정되어 있다(<표 2>참조). 특히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1조 7항(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제시되어 있다.

3)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기본골격이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및 감독정책이 어떠한 틀 하에서 수립되고 있는가를 규제감독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일례로 1974년에 제정된 미국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법)의 기본구조는 이와 같은 3대운용 과정에 기초하여 각종 퇴직연금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5)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②와 ③과 관련 규제감독, 즉 연금투자관련 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등을 중심으로 규제감독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자산운용관련사항

| 구분 | 자산운용관련 사항 (규약상) |
|-------------------------------------|--|
| 적립금운용에 관한 사항 (11조6항) |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선정을 통하여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함 |
| 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11조7항) | - 매반기 1회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금보장방법을 포함하여 3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 -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그밖에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 가입자에게 매년 1회이상 적립금의 운용결과, 운용방법, 그밖에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실시될 것 |
|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 (11조8항) | - 이 경우 가입자에게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될 것 |

특히 제11조 7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매반기 1회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금보장방법을 포함, 3회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영미식보다는 일본식을 보다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②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함으로써 일정한 양적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규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제11조 8항(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에서 보듯이 노동부장관에게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연금자산운용상황에 대한 감독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자산운용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수탁자책임관련 책무는 ① 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③ 정부의 책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사용자의 경우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가입자 교육의무(필요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실시위탁가능)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가입자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운용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는 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② 퇴직연금취급실적 제출의무, ③ 이익제공 사전약속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정부 각각에 대한 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표 3> 법령상의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 구 분 |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 관련근거 |
|---------------|--|----------------------------|
| 사용자 | 근로자 교육실시의무 | 제19조 (사용자의 책무) |
| | 금지의무 · 근로자이익상반행위 금지 ·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퇴직연금제도 운영지해 금지 | |
| 퇴직연금 사 업 자 |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
| | 자산관리계약체결 거부금지 | |
| | 가입자손실보전금지 | |
| | 특별이익제공금지 | |
| | 가입자정보제공금지 특정한 운용방법제시금지 | |
| 정 부 | 세제 등 지원방안강구의무 | 제21조 (정부의 책무) |

특히 수탁자책임관련 감독은 크게 ① 보고 및 조사, ②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③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④ 업무의 협조, ⑤ 권한의 위임·위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표 4>참조).⁶⁾

6) 즉 법 제23조에서 사용자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24조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법 제26조에서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 4> 근로자퇴직소득법령상의 퇴직연금 감독사항

| 구분 | 수탁자책임관련 사항(감독) | 관련근거 |
|-----------------|--|---------|
| 보고 및 조사 |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의 출석을 요구 | 법 제 22조 |
| | 기업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 | |
| 시정조치 | 사용자가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법 제 23조 |
|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 명령 | |
| | 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법 제 24조 |
|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명령 | |
|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 사용자의 부담금미납부 또는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 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중단이후의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근로자에 지급 | 법 제 26조 |
| 업무협조 |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자료요청가능 | 법 제 27조 |
| 권한의 위임·위탁 |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탁가능 | 법 제 28조 |

특징적인 것은 종결에 관한 내용이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종결과 비자발적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는 사용자의 부담금미납부 및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의 폐지 시 중단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종결에 대한 기준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법 제 28 조에는 권한(노동부장관)의 일부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국 등과 달리 주무 감독기관은 노동부, 간접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채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채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태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을 요약·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에는 크게 ① 퇴

7) 노동부(20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32 조

직금의 우선변제, ② 퇴직금의 지급, ③ 규약상의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④ 수급권 보호 등과 같이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사용자의 도산, 수탁기관의 도산 등에 의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채, 규정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보면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및 저당권 다음으로 우선변제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PBGC⁸⁾에 의한 수급권보호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관련사항

| 구분 | 재무건전성관련 사항 | 관련근거 | |
|----------------|--|--|--------------|
| 퇴직금의 우선변제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 | 법 제9조 1항 | |
|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법 제9조 2항 | |
|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 법 제7조 | |
| 규약 | 확정급여형 |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말 적립해야 할 적립금 수준 명시 | 법 제10조 4항 |
|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명시 | 법 제10조 5항 |
| | 확정기여형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 법 제11조 5항 가목 |
| | |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9항 |
| |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급여의 종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과 탈퇴일시금이 포함될 것 | 법 제11조 11항 |
|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 | 법 제11조 13항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 |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 | 법 제12조 | |
| 수급권보호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및 담보제공불가 | 법 제25조 | |

8) 미국의 연금급부보증공사(PBGC: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는 연금기금의 제정과정에 따른 종업원의 지급보증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ERISA제정과 함께 설립된 공사로써 종업원의 연금수급권을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규제감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선행연구로는 먼저 신기철(2003:1-4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기철은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 및 신탁형 퇴직연금지배구조 등과 같이 퇴직연금 지배구조별 규제감독의 특징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사용자, 수탁기관 등에 대한 규제감독의 정도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배구조를 감안한 차별화된 규제감독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류건식(2003:67-120)의 연구는 주로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과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감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류건식은 선진국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우리나라의 규제감독현황 및 특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설문조사방법 등에 의한 통계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성주호(2004:67-96)의 연구는 연금투자전략관점에서 최소분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연금지급능력 및 제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연금투자관련 규제감독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외 선행연구로는 Reisen (1997), Terry and White(1997), 山口修(2003), 土浪修(2002)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Reisen의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연금투자규제 동향과 추이를 분석하고 투자규제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山口修의 연구에서는 일본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수탁자책임규제내용 및 특징 등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다. 또한 土浪修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수탁자책임규제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반문제점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규제감독체계를 실증분석보다는 이론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특정 규제감독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규제감독체계를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적 분석을 기초로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모두를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기존 선행연구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III. 설문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⁹⁾

9)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특정한 퇴직연금제도를 전제하기 보다는 퇴직연금 규제감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 설문조사대상 및 내용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체계는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반영될 규제감독은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즉 사용자, 종업원, 수탁기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한 축을 이루는 수탁기관입장에서의 퇴직연금 규제감독방향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표적인 수탁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담당자(기존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담당자포함)를 대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2004년 2월 현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회사 중 생명보험사 12개사, 손해보험사 10개사 등 총 22개 보험회사로 하였다. 손해보험사는 외국 손해보험사를 배제한 반면, 생명보험사에는 외국 생명보험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 손해보험사의 경우 외국 생명보험사에 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매우 소극적 답변과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6> 분석 대상

| 구분 | 세부내용 | | 특징 |
|------|-------------------|------|-------------------|
| 조사대상 | 보험회사 (22개사) | 생명보험 | 12개사 (외국생보사포함) |
| | | 손해보험 | 10개사 (외국손보사포함) |
| 조사기간 | 2004. 2. 16~2. 28 | | - |

설문조사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방법은 각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담당자 중 책임자급 이상이 직접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는 사전에 설문지 배포 후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범주별로 분류하면 ①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② 수탁자 책임관련 규제감독 사항, ③ 재무건전성 관련(수급권보호) 규제감독사항 등 3개 부문이다. 각 항목별 세부분항 구성은 연금자산 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이 각각 31.6%(6문항), 수탁자 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이 36.8%(7문항)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설문문항의 항목별 분류

| 구 분 | 문항수 | 비중 (%) |
|-----------------|-----|--------|
|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 6 | 31.6 |
|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 7 | 36.8 |
| 채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 6 | 31.6 |
| 전 체 | 19 | 100.0 |

특히 규제감독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항은 대부분 5점 척도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이는 규제감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 보다는 향후 규제감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인식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5점 척도 방식이 다소 유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각 부문의 세부문항 설정은 정형화된 문항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퇴직연금관련 법령 및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등을 기초로 하여 설정하였다.

2. 분석체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표적인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규제감독 니드 및 방향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근로자퇴직보장법령제정 및 시행령 제정 시보다 정형화된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은 최근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자산운용관련 사항,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채무건전성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험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① 보험회사들은 이들 3가지측면의 규제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하는가 하는 방향성분석(니드 및 인식분석)을 한 후에, ②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¹⁰⁾간 니드 및 인식의 수준차이는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가하는 보험회사그룹간 수준차이분석(통계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즉 설문조사의 내용 등을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규제감독 인식실태를 보험회사그룹별로 연후(설문조사에 기초한 이론적 분석단계)에, 통계분석을 통해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의 퇴직연금 규제감독 인식수준차이 등을 실증분석(규제감독 통계분석 단계)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제Ⅳ장 1에서는 설문조사의 내용 및 항목들을 통하여 규제감독 인식실태를 각 설문항목별로 대비하여 조망해보고 제Ⅳ장 2에서는 <표 7>과 같은 설문조사를 기초로 통계분석을 시도하여, 우리에게 주는 제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표본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설문조사의 한계와 자료 개수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방법(Non-parametric Statistical method)인 Kruskal -Wallis 검정¹¹⁾ 등

10) 대형생명보험사는 자산기준 상위 4개사를, 대형손해보험사는 자산기준상위 5 개를 했기 때문에 대형보험회사그룹은 총 9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을 통해 보험회사 그룹간 퇴직연금 규제감독 인식수준 차이 등을 검정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규제감독체계 인식 실태분석

가.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방향을 연금운용의 과정상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재무건전성관련 규제사항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에 대한 설문조사항목을 총 6개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8>과 같다.¹²⁾ <표 8>에서 보면 법규상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규제가 바람직한가(B-1)하는 질문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3.40의 전체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질문(변수)은 운용기관이 금융자본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B-6)으로 전체 평균값 4.37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 결과, 변수 6개의 전체 평균값은 4.01을 나타내고 있어 보험회사의 규제감독방향은 전반적으로 설문에서 요구하는 규제감독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변수 B-1(법규상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에서는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타그룹보다 가장 낮은 평균값 3.00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낮은 평균값은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3.20인 것으로 나타나 대해보험회사보다 중소형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변수 B-2(원칙적으로 사용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에서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모두 4.0이상의 평균값을 보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1) 비모수적방법에 의해 둘이상의 모평균이 서로 차이가 남을 검증하는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12) 규제감독 인식실태 분석은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가 3점 이하인 경우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3점은 보통의 인식을 가진 것으로, 3점 이상은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의제하였다.

<표 8>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 변 수 | 평균값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
| |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 법규상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B-1) | 3.40 | 4.00 | 3.00 | 3.40 | 3.20 |
| 원칙적으로 사용주(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B-2) | 4.20 | 4.00 | 4.00 | 4.40 | 4.40 |
| 연금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B-3) | 3.73 | 3.75 | 3.38 | 4.20 | 3.60 |
| 제도초기에는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B-4) | 4.17 | 4.75 | 3.75 | 4.80 | 3.40 |
| 근로자금융상품지식증대 금융시장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존재(B-5) | 4.18 | 4.50 | 4.00 | 4.00 | 4.20 |
|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이 유도하도록 감독당국이 적극 독려할 필요성존재(B-6) | 4.37 | 4.50 | 4.00 | 4.80 | 4.20 |
| 전 체 | 4.01 | 4.25 | 3.69 | 4.27 | 3.83 |

③ 변수 B-3(연금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에서는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가장 낮은 평균값 3.38을, 대형 손해보험사그룹이 가장 높은 평균값 4.20을 보여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타그룹이 비해 상대적으로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데에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④ 변수 B-4(제도초기에는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에서는 변수 B-3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타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값 3.75를 나타내고 있다 ⑤ 변수 B-5(근로자금융상품지식증대, 금융시장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 존재) 및 B-6(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을 유도하도록 감독당국이 적극 독려할 필요성 존재) 모두 전그룹이 4.0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 설문조사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의 평균값이 3.64로 가장 낮은 평균값

을 보이고 있는 반면,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평균값 4.16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수 C-1(DC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책임의 명확화가 요구), C-2(사용자, 수탁기관 등 연기금운용 관련자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구체화필요), C-4(종업원정보제공충실, 서류관리·문서명확화, 수탁기관 자체적인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책정에 대한 독려필요), C-5(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 등은 평균값이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규제감독의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변수별, 그룹별로 살펴보면 각 변수간 그룹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 변수 | 평균값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
| |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 DC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화 요구됨(C-1) | 4.06 | 4.00 | 4.25 | 4.00 | 4.00 |
| 사용자, 수탁기관 등 연기금운용관련자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제재조치구체화필요 (C-2) | 4.05 | 4.00 | 4.00 | 4.00 | 4.20 |
|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 (C-3) | 3.64 | 3.75 | 3.00 | 4.20 | 3.60 |
| 종업원정보제공충실, 서류관리·문서명확화, 수탁기관자체적인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책정 독려필요 (C-4) | 4.02 | 3.75 | 4.13 | 4.20 | 4.00 |
| 운용기관측의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에 대한 구체적기준마련(C-5) | 4.09 | 4.50 | 3.88 | 4.00 | 4.00 |
|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설정(C-6) | 4.16 | 4.25 | 4.00 | 4.20 | 4.20 |
| 전 체 | 3.99 | 4.04 | 3.88 | 4.10 | 4.02 |

먼저 변수 C-1, C-2에서는 대형 생명보험사그룹,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대형손해보험사그룹, 중소형 손해보험사 그룹간 차이가 매우 미미한 반면, 변수 C-4의 경우에는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평균값 3.64에 훨씬 못 미치는 3.00의 평균값이 보이지만 대형 손해보험사는 4.20의 높은 평균값을 보여 양그룹간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변수 C-4에서는 타그룹이 4.0이상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형 생명보험사 그룹이 3.75라는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5개 변수의 평균값은 3.99로 평균이상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경우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은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수탁자책임의 가이드라인 설정, 투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10> 수탁자 책임위반 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적정성여부

(단위 회사수 %)

| 변 수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전체 | | 비율 (%) |
|--------|------|-----|------|-----|----|-----|--------|
|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
| 높은 편이다 | 2 | 4 | 2 | 0 | 4 | 4 | 36.4 |
| 적정하다 | 2 | 4 | 2 | 4 | 4 | 8 | 54.5 |
| 낮은 편이다 | 0 | 0 | 1 | 1 | 1 | 1 | 9.1 |

다음으로 수탁자 책임위반 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대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보험회사가 36.4%인 8개사,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가 54.5%인 12개사, 낮은 편이라고 응답 한 보험회사가 9.1%인 2개사 등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표 10>참조). 즉 5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에 따라 제도적 관점에서는 수탁자책임의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수탁자책임위반시의 과태료 부과는 낮게 설정되기를 원해 향후 5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규정은 보험회사측면에서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과태료 규정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가 과반수를 넘은 54.5%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다.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표 11>참조), 변수 D-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에 대한 평균값이 3.49로 변수D-2(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제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 변수 D-2-1(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제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존재), 변수 D-5(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표 11>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 변 수 | 평균값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
| |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D-2) | 3.96 | 4.00 | 4.25 | 3.60 | 4.00 |
|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연금재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필요성존재 (D-2-1) | 4.01 | 4.00 | 4.25 | 3.80 | 4.00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제9조1항 및 제9조2항)의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 (D-4) | 3.49 | 4.25 | 3.50 | 3.20 | 3.00 |
|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 (D-5) | 3.96 | 4.50 | 3.75 | 4.60 | 3.00 |
| 전 체 | 3.86 | 4.19 | 3.94 | 3.80 | 3.50 |

변수 D-2, 변수 D-2-1의 경우는 평균값이 대략 4.0 수준인데 특징적인 것은 타그룹보다 대형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이 3.0 대라는 점이다. 특히 변수 D-4의 경우 생명보험사에 비해 손해보험사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대형 손해보험사그룹과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각각 3.20과 3.00의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변수 D-5의 경우 전체 평균값은 3.96인데 반하여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과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각각 3.75 및 3.00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중소형 보험회사의 평균값이 대형 보험회사의 평균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차원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표 12>참조), 미국 PBGC식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총 22개 보험회사 중 59.1%에 해당하는 13개 보험회사가 선호하고 있는 반면, 최소책임준비금제도 도입은 총 22개 보험회사 중 40.9%에 해당하는 9개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수급권보호장치 마련을 보다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형 보험회사 9개사 중 대부분인 8개사가 미국 PBGC식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전체 13개사 중 8개사는 미국 PBGC식 지급보증제도도입 보다는 오히려 최소책임준비금제도 도입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소형 보험회사가 최소책임준비금제도를 PBGC식 지급보증제도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는 PBGC식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의 가중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지급보증제도유형의 선호도

| 변 수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전체 | | 비율 (%) |
|--------------|------|-----|------|-----|----|-----|--------|
|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
| 최소 책임 준비금제도 | 0 | 5 | 1 | 3 | 1 | 8 | 40.9 |
| PBGC식 지급보증제도 | 4 | 3 | 4 | 2 | 8 | 5 | 59.1 |

다음으로 수탁기관 도산시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장치로 설정되어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 한도에 대한 적합성(적정성)여부를 질문한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22개 보험회사중 45.4%에 해당하는 10개 보험회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예금자보호법 규정의 적합성 여부

| 변 수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전체 | | 비율 (%) |
|---------------|------|-----|------|-----|----|-----|--------|
|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
| 적정하다 | 2 | 3 | 2 | 3 | 4 | 6 | 45.4 |
| 5천만원~1억원 적당 | 2 | 3 | 3 | 0 | 5 | 3 | 36.4 |
| 1억원~1억5천만원 적당 | 0 | 1 | 0 | 1 | 0 | 2 | 9.5 |
| 1억5천만원 이상 적당 | 0 | 1 | 0 | 1 | 0 | 2 | 9.5 |

따라서 5천만원 한도가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장치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36.4%인 8개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이내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9.5%인 2개사, 1억 5천만원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9.5%인 2개사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회사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를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규제감독체계 인식수준 차이분석

가.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과 관련된 6개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각 변수를 Kruskal-Wallis 분석에 의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독립변수)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독립변수)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변수 B-1, 변수 B-3, 변수 B-5의 경우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변수 B-2(원칙적으로 사용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에 대한 Kruskal-Wallis 검증결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형 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는 변수 B-4에서 유의수준 5%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변수 B-6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대형 보험회사에 비해, 엄격한 자산운용규제의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표 14>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 변수 | 생명/손해 | | 대형/중소형 | |
|---|-------------|---------|-------------|---------|
| | $\chi^2(1)$ | p-값 | $\chi^2(1)$ | p-값 |
| 법규상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B-1) | 0.046 | 0.831 | 1.097 | 0.295 |
| 원칙적으로 사용주(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B-2) | 4.662 | 0.031** | 0.807 | 0.369 |
| 연금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B-3) | 0.747 | 0.388 | 1.031 | 0.310 |
| 제도초기에는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B-4) | 0.020 | 0.888 | 7.310 | 0.007** |
| 근로자금융상품지식증대 금융시장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존재 (B-5) | 0.001 | 0.971 | 0.345 | 0.557 |
|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이 유도하도록 감독당국이 적극 독려할 필요성존재(B-6) | 0.313 | 0.576 | 2.885 | 0.089* |
| 전 체 | 1.136 | 0.287 | 4.372 | 0.037** |

주 :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낸다.

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분석결과(<표 15>참조), 변수 C-3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 변 수 | 생명/손해 | | 대형/중소형 | |
|---|-------------|-------|-------------|--------|
| | $\chi^2(1)$ | p-값 | $\chi^2(1)$ | p-값 |
| DC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화가 요구됨(C-1) | 0.381 | 0.537 | 0.391 | 0.532 |
| 사용자, 수탁기관등 연기금운용관련자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제 제재조치구체화필요(C-2) | 0.245 | 0.621 | 0.133 | 0.715 |
|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C-3) | 2.273 | 0.132 | 2.905 | 0.088* |
| 종업원정보제공충실,서류관리 문서명확화, 수탁기관자체적인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책정에 대한 독려필요(C-4) | 0.140 | 0.709 | 0.070 | 0.791 |
| 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에 대한 구체적기준마련(C-5) | 0.322 | 0.570 | 0.418 | 0.518 |
|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설정(C-6) | 0.170 | 0.680 | 0.175 | 0.676 |
| 전 체 | 0.362 | 0.547 | 0.459 | 0.498 |

주 :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낸다.

다만 변수 C-3(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에서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그리고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제시된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감독사항에 대해 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규제감독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강화의 필요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다.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16>과 같은데,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 D-2-1(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제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 존재)에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

10%유의수준하에서 뚜렷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변수 D-5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은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수 D-2(연금계리사 제도 도입에 의한 연금제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와 변수 D-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의 퇴직금 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 등에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 변수 | 생명/손해 | | 대형/중소형 | |
|---|-------------|--------|-------------|--------|
| | $\chi^2(1)$ | p-값 | $\chi^2(1)$ | p-값 |
|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제정의 적정성검증 필요(D-2) | 2.227 | 0.136 | 0.755 | 0.385 |
|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제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존재(D-2-1) | 3.106 | 0.078* | 1.028 | 0.311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제9조항 및 제9조2항)의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 (D-4) | 2.278 | 0.131 | 0.478 | 0.489 |
|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 (D-5) | 0.059 | 0.808 | 3.488 | 0.062* |
| 전 체 | 0.601 | 0.438 | 0.117 | 0.733 |

주 :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낸다.

3. 시사점 및 분석상의 한계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가 바라는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 등을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차원에서 시사점을 요약·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인식실태측면에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①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보험업계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투자규제(분산투자규제 등)존재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반면,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 투자대상 및 투자규제의 점진적 완화, 수탁기관의 자주적 윤리규범의 수립 등에는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보험회사의 평균값이 중소형보험회사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여타변수보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이 전사평균값보다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탁자책임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다소 높다는 지적이 훨씬 많아 5천만원 과태료한도의 재조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재무건전성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사에서 특히 퇴직금우선변제조항이 수급권보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무건전성기준에 부합된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중소형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무건전성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설정문제는 향후 많은 논란과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퇴직금우선변제조항의 체계적인 검토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급보증제도로는 미국 PBGC식 지급보장제도를 보다 선호함으로써 보험업계는 법적·제도적 수급권보장장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즉 보험업계는 종업원 수급보장차원에서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강화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설문분석결과에서 보면, Kruskal-Wallis 검증결과, ①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의 경우는 대형손해보험사/중소형손해보험사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②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뿐만 아니라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보험업계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은 전사차원에서 그룹간 차이는 없지만 연금계리사에 의한 검증문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서,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설정문제는 대형손해보험사/중소형손해보험사간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이상과 같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정형화된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에는 분석대상의 한계 등으로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수탁기관인 보험회사가 바라는 규제감독체계는 안전성 규제감독체계를 지향하면서 국내실정 및 여건을 고려하되 점진적으로 선진형 규제감독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근로자퇴직보장법령 제정 및 시행령 제정시 이상과 같은 보험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규제감독정책의 방향성을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에 한정(은행등을 미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규제감독체계를 제시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설문문항의 설정과정에서 주관성 및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은행, 종업원 등의 입장에서 바라는 규제감독체계를 조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V. 결론

우리나라는 늦어도 2005년 2월이후에는 3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확립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만 입법예고 되어 있을 뿐, 재정부 및 노동부간의 의견조율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연금제도의 도입초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가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수급권보장이 라는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① 연금제정의 안전성증시 규제감독 지향, ② 삼위일체식 지급보증체제의 확립 ③ 자율투자규제체계로의 점진적 전환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체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연금자산운용규제면에서는 ① 최소한도의 투자규제 견지, ② 단계적 투자규제 정책의 수립, ③ 상시적 퇴직연금 운용 감독체계 등이 요구되며, 수탁자책임규제면에서는 일반적인 수탁자책임률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데, 이는 ①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② 투자교육 등 정보공시의 강화, 자주적 윤리규범 및 컴플라이언스체제구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재무건전성규제면에서는 ①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제정 검증 필요, ② 감독규제차원에서 지급능력비율제도 제정, ③ 연금회계기준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정적인 측면이 아닌 동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근본목적, 즉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보호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류건식, 「퇴직연금 지배구조 확립과 기금운용 감독방안」, 『정책세미나 자료』, 보험개발원, 2003. 10.
- 성주호, 「연금금 지급능력 안전성을 위한 장기상각 전략방안」, 『보험개발연구』 제41호, 보험개발원, 2004. 3.
- 신기철, 「기업연금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증권에탁지』, 증권에탁원, 2003. 4.
- 노동부, 『근로자퇴직보장법령』, 2003. 10.
-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N.G. Terry and P.J. 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and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 ~175.

山口修, 『確定拠出年金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03. 5.

土浪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関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険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K C I

【별첨】 퇴직연금 규제감독관련 설문서

I.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 | | | | | | |
|-----|---|---|---|---|--|-----|
| 아니다 | | | | | | 그렇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I-1) 법규상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I-2) 원칙적으로 충실의무 등의 수탁자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사용자(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하다().
- I-3) 연금기금운용투자가이드라인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4) 제도도입초기에는 원금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 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5) 향후 근로자의 금융상품지식 증대, 영미식 신탁제도의 발전, 국내 자본시장의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대상 및 투자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I-6) 운용기관이 금융자본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 | | | | | | |
|-----|---|---|---|---|--|-----|
| 아니다 | | | | | | 그렇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II-1) 연금운용의 규제완화패턴을 감안하는 경우 확정기여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화가 요구된다().
- II-2)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마다의 수

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

II-3)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II-4)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충실, 서류관리·문서의 명확화, 그리고 운용기관 자체적으로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독려대책이 요구된다() .

II-5) 자산운용이 자율화되면 기업은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운용기관 및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II-6)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

III-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제32조에 의하면 수탁자책임의무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수탁자)는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된 과태료부과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 ① 과태료의 부과수준이 매우 높다
- ② 과태료의 부과수준이 다소 높다
- ③ 적정하다
- ④ 과태료의 수준이 다소 낮다
- ⑤ 과태료의 수준이 매우 낮다

III.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 | | | | |
|-----|---|---|---|-----|
| 아니다 | | | | 그렇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III-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장기적으로 어느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소 책임준비금제도
- ② PBGC 등과 같은 지급보증제도

III-2)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제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하다 () .

III-2-1)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제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III-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현재 근로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

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천만원 예금자보호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당하다 ② 5천만원~1억원적당 ③ 1억원~1억 5천만원적당 ④ 1억 5천만원이상적당

Ⅲ-4)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퇴직금 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 >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9조 1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9조 2항>

- ① 많이 보장되어 있다 ②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③ 잘모르겠다 ④ 거의 보장되어 있지 않다 ⑤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Ⅲ-5)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12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하다().

수고하셨습니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review the regulation and supervisory framework on currently proposed(perspective) law of corporate pension system, and to find out the direction and the proposition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ory system that is favored by insurance companies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for pension fund managing company. To understand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the operation of pension funds, we survey the 22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we find as follows; First, the gradual transition toward the self-regulation of investment framework is necessary in the long-run, however, minimum regulation on the investment is desirable in the early stage of the corporate pension system. Second, insurance compan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ole of fiduciary duty and expect firm investment education and building of compliance system to be well established. Third, the insurance companies consider that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corporate pension system would be directed to the stability of pension finance and that the inspection of pension finance by pension actuary and the reenforcement of risk management through the construction of pension accounting.

※Key Words : corporate pension system, regulation, supervision, retirement pension